

# 국외근무자 복무시행규칙

[제정 2011. 4. 28]

[개정 2012. 6. 7]

[개정 2014. 2. 27]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의 국외 근무명령을 받은 임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국외근무자라 함은 진흥원 인사명령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자로 해외사무소 파견, 정부사업 등의 수행을 위한 파견, 국외 장기출장 등 1년 이상 동일한 지역에서 진흥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국외근무자의 복무처리에 있어 법령, 정관, 규정 및 다른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.

## 제2장 소 속

**제4조(소속)** 국외근무자의 소속은 직무분장 운영규칙상의 직무분장 소속부서로 한다.(개정 2012.6.7)

## 제3장 근무 및 평가

**제5조(휴일)** 국외근무자의 유급휴일은 복무규정 시행규칙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일과 근무지 국가의 국경일로 한다.

**제6조(근무평정)** ① 국외근무자의 근무평정은 매년 공지되는 진흥원 인사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며, 평가등급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(이하 “원장”

이라 한다)이 직접 부여한다.

② 기타 근무평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인사규정 시행규칙 및 제1항의 인사평가 기본계획의 적용을 받는다.

## 제4장 구매 및 계약

**제7조(구매)** 국외근무자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진흥원 유형자산 사무실 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가구와 기자재를 현지에서 구매하여 진흥원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.

**제8조(계약)** ① 국외근무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 기업, 기관과의 계약은 계약규칙 제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업 등의 국내 일반경쟁입찰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규칙과 별도로 일상감사 및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.

## 제5장 현지출장

**제9조(현지출장)** ① 국외근무자가 근무하는 국가 내에서의 현지출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무지 국가 내 이동을 일컫는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 근무지가 유럽국가인 경우 유럽국가 간 이동은 현지출장으로 간주한다.(개정 2014.2.27)

**제10조(출장여비)** ① 국외근무자의 현지출장 여비는 여비지급규칙 <별표 4> 및 <별표 5>에 의거 계산 지급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왕복 24시간 미만의 국외근무자의 현지출장 여비는 <별표>에 따른 정액여비를 지급한다.

## 제6장 국외출장

**제11조(국외출장)** 국외근무자의 국외출장은 해당 근무지 국가 이외 국가로의 이동을 일컫는다.

**제12조(국외여비)** ① 국외근무자의 국외여비는 여비지급규칙 <별표 4> 및 <별표 5>에 의거 계산 지급한다.

② 해외 근무지에서 한국으로의 국외여비는 여비지급규칙 <별표 4>의 나등급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

**제13조(특수상황의 여비지원)** 국외근무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 전후 3월 이내에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국외근무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1인의 왕복항공운임을 지원한다.

**제14조(보칙)** 이 규칙에 해당되지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.

#### 부 칙(2011. 4. 28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10년 10월 27일부터 소급적용한다.

#### 부 칙(2012. 6. 7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1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14. 2. 27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>(개정 2014.2.27)

## 국외근무자의 현지출장 여비

### 1. 교통비

#### 가. 유럽연합국

- 본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US\$0.30/1Km를 지급
- 지불가능 최대금액은 US\$190로 제한

#### 나. 미국

- 본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US\$0.20/1Km를 지급
- 지불가능 최대금액은 US\$130로 제한

### 2. 일 비

소요시간	지급금액	
	유럽국가	기타 국가
8~14 시간	US\$9	US\$6
14~24 시간 미만	US\$17	US\$12

\* 유럽국가 포함여부는 외교통상부의 유럽국가 지역정보 리스트에 포함되는 국가로 한다.